



유럽사법재판소(CJEU), YouTube에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보 요청 시 “이름과 주소”만을 제공하여야 함.

최종모 |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, 법학박사

2020년 4월 2일 유럽사법재판소(CJEU)는 저작권자가 무단으로 YouTube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업로드 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 요청 시 YouTube는 저작권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“이름과 주소”만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함. 다만 해당 정보는 우편 주소만을 의미하고, 이메일 또는 IP 주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.

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

- 원고 Constantin Film은 2013년과 2014년에 원고의 영화“Parker” 및 “Scary Movie 5”를 YouTube에 불법적으로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추적하고자 YouTube에 해당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주소, 전화번호와 IP 주소를 요청함.¹⁾
- 프랑크푸르트(am Main)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,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Youtube에게 침해자의 전자우편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원고의

1) Az. C-264/19

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.²⁾

- 독일 연방대법원(BGH)은 지식재산권집행지침(2004/48/EC) 제8조 제2항(a)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권리자에게 침해자의 “이름과 주소”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, 원고가 Youtube에 요청한 전자우편주소 및 IP 주소 등이 해당 규정 명시된 “이름과 주소”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(CJEU)에 판단을 요청함.³⁾

유럽사법재판소(CJEU)의 판단

- 유럽사법재판소(CJEU)는 지식재산권집행지침(2004/48/EC) 제8조 제2항(a)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“이름과 주소”에 침해자의 전화번호 및 IP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.⁴⁾
- 이는 주소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지 않으며, 원고가 요청한 정보를 지식재산권집행지침(2004/48/EC) 제8조 제2항(a)에 명시된 “이름과 주소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여, 현행 규정상 지식재산권집행지침(2004/48/EC) 제8조 제2항(a)을 근거로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.⁵⁾

2) Az. C-264/19

3) Az. C-264/19

4) Az. C-264/19

5) Az. C-264/19

평가 및 전망

- 저작권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출 시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집행지침 제8조 제2항(a)에 따른 정보제공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임.
- 향후 유럽지식재산권집행지침 제8조 제2항(a)에 따른 정보제공범위인 “이름과 주소”에 대하여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. 이는 위반자의 “이름과 주소”가 실제와 다른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임.
- 유럽연합 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국내 플랫폼에 업로드한 자에 정보 요청 시, 제공할 정보를 한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임.
- 향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정보 요청 시 법 규정상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 요청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 가능함.

참고 자료

<https://bit.ly/2yCTz0F>

<https://bit.ly/3ayjTX3>